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형)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 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 지원규모 : ○○○개소(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 및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 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2개)중 자율선택

구분	사업 메뉴 (총 22개)	
생산·수출 기반(7)	수출컨설팅-리스트	제품개발(기술도입)
	수출전문인력 양성-리스트	수출보험-리스트,전담기관
	해외인증 등록-리스트,전담기관	통번역(수출용 자료)-리스트
	법무·세무·회계 자문-리스트	
수확후 관리(4)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포장디자인 개발-리스트
	수출 공동브랜드-리스트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리스트,전담기관
운송 및 통관(4)	샘플통관운송-리스트	물류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리스트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리스트
판로 개척(7)	글로벌홍보	현지시장 개척
	개별식품박람회 참가-리스트	해외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상담회
	지사화	-

* 사업 메뉴별 정산기준은 【붙임 4, 5】 자료 참고

□ 배정 한도 : 최근 3개년 아래 인정 수출기준을 토대로 공사가 정한 예산배정 기준에 의거 업체별 지원한도 부여 (붙임2 품목 대상)

○ 신선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 수출실적에 한함

* 가공식품 수출실적 : 별도 양식으로 제출시 검증 후 인정

○ 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에 따른 ID 등록 및 사전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품목, 해당 국가 수출실적 산출 제외

* ① 「일본수출 채소류 ID제도」, ②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③ 「홍콩 수출딸기 사전신고제」, ④ 「일본수출파프리카 사전등록제」, ⑤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연초 배정액의 80%이상 정산 업체 수시 추가 배정 (예산 한도내 9월말 까지)

* 수시 추가배정 세부기준은 배정 후 별도 안내

< 인정수출 기준 >

- **(인정수출범위)** `23년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 `24~`25년 舊 aT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기준 【붙임2】 수출실적(수출액)
 - * (공통) 타 기관 지원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 불인정
 - ** 수출실적 중,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결성품목은 공동정산 수출실적만을 배정 모수(인정수출)로 반영. 단, 통합조직(통합단계) 회원가입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동정산 수출실적 요건적용 예외 인정
 - *** 수출실적 원자료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화주로 신고된 수출실적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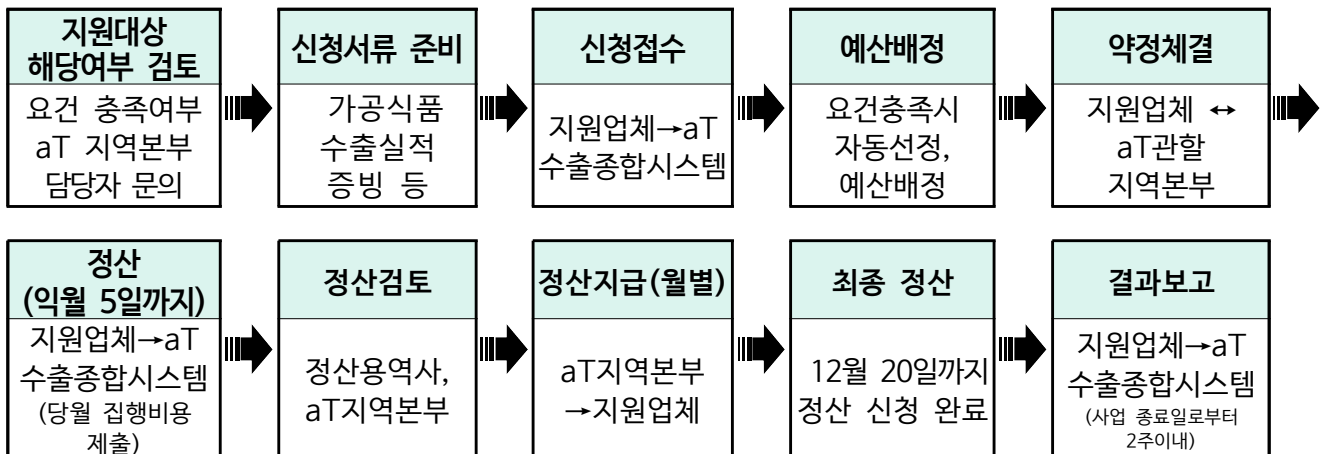
< 지원한도 배정기준 >

- **(기본배정①)** 인정 수출기준의 가중평균 수출실적 × 수출액 구간별 지원단가
 - * 가중평균 반영 방식 : (`25년) 50%, (`24년) 30%, (`23년) 20%의 합
- **(기본배정②)** 전전년 대비 전년 수출실적 증가율 구간별로 '기본배정 ①' 에서 부여한 한도의 5~10%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

수출 증가율	10%초과 ~ 30% 미만	30%~
추가 배정률	5%	10%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6. 12. 20까지**

* 단, 정산 인정기간 : `26.1.1.~ `26.12.20 (기간 내 비용집행 및 정산 신청 완료)



2

모집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5. 2. 6.(금) 23:59

- 신청형은 지정품목(붙임2) 수출화주로 신고된 수출실적만 인정
 - * 간접수출실적만 있는 업체는 공모형(직·간접인정) 신청 가능
- 신청형 또는 공모형 정확히 확인 후 진행 (신청형·공모형 중복신청 불가)

□ 수출 구간별 추정 배정 한도 (예시이며,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형

구분	단계 구분 없음				
수출구간	10만불 미만	10만~100만불	100만~500만불	500만~1,000만불	1,000만불~
배정액	15백만원	15~80	80~200	200~500	500~1,500

○ 공모형

구분	①도전	③기본	④성장	⑤심화	⑤고도화
수출구간	20만불 미만	20만~100만불	100만~500만불	500만~1,000만불	1,000만불~
배정액	15백만원	15~45	45~150	150~250	250~500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신청형)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기한내 업로드)
- ※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

□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목록(공통)]

-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②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③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온라인 제출
 -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⑤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https://tmydata.or.kr> * 붙임 6 참고
- * 기 동의 업체 재동의 불필요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 ① [가공식품 수출실적의 경우] 국산 원료 50% 이상 사용 수출실적 제출 ☞ 첨부 안내자료 참조
 - * 지원대상 품목[붙임2]의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국산 확인)등 증명된 것에 한하여 인정
- ②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회원가입 증명서(통합조직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필요
- ③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공동정산 수출실적 (통합조직에 공사 별도 요청/ 제출필요 없음)
 - * (25.12월 기준)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3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여 선정

- 업체별 국산원료 사용검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예산 배정 불가

□ 결과 발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확인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 주요 일정 〉

유형	모집공고	신청기한	선정 및 배정	약정체결 및 사업개시
신청형	'26.1.22	'26.2.6(금) 23:59	3월 초 (신청시 자격요건 충족 필요)	3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할지사 및 문의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51 031-8060-6054	인 천	032-272-3007	강 원	033-920-1546 033-920-1548
세종충북	043-902-9525 043-902-9531	대전세종충남	042-389-5017 042-389-5019	전 북	063-904-5873 063-904-5874
광주전남	062-940-7013 062-940-7015	대구경북	053-218-4908 053-218-4913	부산울산	051-947-1083 051-947-1086
경 남	055-608-5804	제 주	064-748-9477 064-900-8657	본사	061-931-0861 061-931-0862 061-931-0863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선정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임산물, 수산물 수출업체
 - * 단,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수출물류비를 수령했거나, 복수의 수출상품을 취급하고 농식품과 임산식품, 수산식품 혼재 시 지원 가능
-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중복지원 제한>

- (공통)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불가 (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
- (중복 선정 제한) 패키지 사업의 다수 메뉴와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개별 aT 수출지원사업 (붙임 3)
- (메뉴 사용 제한)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aT 개별 수출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 사용 제한이 필요한 메뉴 (붙임 3)
- (타기관 수출바우처) 중복선정 불가

* 타 기관 수출바우처 사업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집행률 평가> 배정액 집행률 수준에 따라 익년도 패널티 부여

집행률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30%이상	30%미만
패널티 (익년도 기본배정액)	20% 감액	30% 감액	50% 감액	참여 제한

붙임 2 신청형 수출인정 대상품목 및 HS코드

1 과실류(신선)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감귤	0805-21-1000	자두(신선)	0809-40-1000
만다린 (탄제린·세트수며 포함/신선·건조한 것)	0805-21-9000	키위푸르트(신선)	0810-50-0000
기타 (감귤류의 과실신선·건조한 것)	0805-90-0000	단감(신선)	0810-70-1000
포도(신선)	0806-10-0000	매실(신선)	0810-90-5000
사과(신선)	0808-10-0000	그 밖의 과실(가태신선한 것)	0810-90-9000
배(신선)	0808-30-0000	과실, 견과류(냉동·초분류말기, 나무말기, 밥, 대추, 잣 등 이외 기타)	0811-90-9000
살구(신선)	0809-10-0000	감귤류의 껍질	0814-00-1000
복숭아(배타린 포함신선)	0809-30-0000		

2 화훼류(신선)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장미(접목 여부 불문)	0602-40-0000	카네이션(절화신선)	0603-12-0000
난초(산식물)	0602-90-1010	심비디움(절화신선)	0603-13-1000
국화	0602-90-1050	팔레놉시스(절화신선)	0603-13-2000
선인장류(산식물)	0602-90-1060	기타 난류(절화신선)	0603-13-9000
기타 화훼류	0602-90-1090	국화(절화신선)	0603-14-0000
기타산식물	0602-90-9090	백합(달리움종)	0603-15-0000
장미(절화신선)	0603-11-0000	튤립(절화신선)	0603-19-1000
		기타 절화(신선)	0603-19-9000

3] 채소류(신선)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0701-90-0000	시금치류(신선 냉장)	0709-70-0000
방울토마토	0702-00-1000	호박류(쿠쿠르비타종(신선 또는 냉장))	0709-93-0000
토마토(기타, 신선 냉장)	0702-00-9000	깻잎	0709-99-3000
양파(껍질을 벗긴 것)	0703-10-1010	기타의 채소의 기타 (신선 또는 냉장)	0709-99-9000
양파(기타)	0703-10-1090	채소류의 혼합물(냉동)	0710-90-0000
마늘(탈피한 것)	0703-20-1000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0711-90-5099
마늘(기타)	0703-20-9000	무(건조)	0712-90-2020
대파	0703-90-2000	기타채소(건조)	0712-90-2099
쪽파	0703-90-3000	고구마(신선)	0714-20-1000
과속채소(기타양파, 쪽파, 마늘, 라디시)	0703-90-9000	서류(기타)	0714-90-9090
꽃양배추, 브로콜리(신선 냉장)	0704-10-0000	수박(신선)	0807-11-0000
양배추(신선 냉장)	0704-90-1000	참외	0807-19-1000
배추(신선 냉장)	0704-90-2000	멜론류 기타	0807-19-9000
결구상치(신선 냉장)	0705-11-0000	초본류 딸기(신선)	0810-10-0000
상치(결구상치 이외 기타신선 냉장)	0705-19-0000	초본류 딸기(냉동)	0811-10-0000
당근(신선 냉장)	0706-10-1000	양파종자	1209-91-1010
무(신선 냉장)	0706-90-1000	기타(과속종자)	1209-91-1090
고추냉이와 겨자무	0706-90-2000	무종자	1209-91-2000
오이류(신선 냉장)	0707-00-0000	고추·단고추 및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1209-91-3000
콩(비그나, 파세리속신선 냉장)	0708-20-0000	양배추 종자	1209-91-4000
아스파라거스(신선 냉장)	0709-20-0000	토마토 종자	1209-91-5000
가지(신선 냉장)	0709-30-0000	기타(채소종자)	1209-91-9000
단고추(빨리입예한한다)	0709-60-9000	과종용의 종자, 과일 포자(기타)	1209-99-9000
기타(고추류)	0709-60-9000	한약재(기타향료, 의약품 등)	1211-90-9090

4] 버섯류(신선)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버섯의 종균	0602-90-9040	기타버섯(신선냉장)	0709-59-9000
양송이 버섯(신선·냉장한 것)	0709-51-7000	양송이 버섯(건조)	0712-31-1000
큰느타리버섯(신선냉장)	0709-59-4010	느타리버섯(건조)	0712-39-1040
기타 버섯(신선냉장)	0709-59-4090	팽이버섯(건조)	0712-39-1050
팽이버섯(신선냉장)	0709-59-5000	기타버섯(건조)	0712-39-1090

5 곡 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쌀보리(중재)	1003-10-3000	멥쌀(nonglutinous)	1006-30-1000
쌀보리(기타)	1003-90-3000	참쌀(glutinous)	1006-30-2000
메현미(nonglutinous)	1006-20-1000	밀리트 기타(중재)	1008-21-9000
찰현미(glutinous)	1006-20-2000	곡물류(메밀·조·카리드등이외 기타)	1008-90-0000

6 김치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채소, 채소 혼합물(기타)	2004-90-9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005-99-1000

7 인삼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수삼(기타)	1211-20-1190	인삼(인삼 뿌리 잎 줄기 껍질 제외 기타)	1211-20-9900
백삼(기타분삼)	1211-20-1291	인삼엑스	1302-19-1110
백삼(기타기타)	1211-20-1299	인삼엑스분	1302-19-1120
홍삼(기타분삼)	1211-20-1391	인삼액즙, 인삼엑스 (백삼으로 만든 것 인삼 정 인삼 분 이외 기타)	1302-19-1190
홍삼(기타기타)	1211-20-1399	인삼류(함액삼)	1302-19-1210
인삼분(백삼외것)	1211-20-2110	인삼류(함액삼분)	1302-19-1220
인삼타브렛, 캡슐(백삼외것)	1211-20-2120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으로 만든 것 함액삼 분 이외기타)	1302-19-1290
인삼분말 (백삼으로 만든 것 산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인삼분 타브렛이나 캡슐 제외)	1211-20-2190	인삼의 액즙과 엑스 (백삼 함액삼 제외기타)	1302-19-1900
홍삼분	1211-20-2210	인삼차	2106-90-3011
홍삼타브렛, 캡슐	1211-20-2220	백삼조제품(인삼차이외기타)	2106-90-3019
홍삼분말(홍삼분 타브렛 캡슐이외기타)	1211-20-2290	홍삼차	2106-90-3021
인삼잎과 줄기 (산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3100	홍삼조제품(함액삼이외기타)	2106-90-3029
		인삼음료	2202-99-1000

8) 전통주(가공)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사과주	2206-00-1010	탁주	2206-00-2030
배술	2206-00-1020	약주	2206-00-2020
과실 발효주 (포도주, 사과주, 배술 이외 기타)	2206-00-1090	곡물 발효주(창, 약주, 탁주 이외 기타)	2206-00-2090
청주	2206-00-2010	인삼주	2208-70-1000
		기타 리큐르류 및 코디얼	2208-70-9000

9) 장류(가공)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간장(soya sauce)	2103-10-0000	춘장	2103-90-1020
된장	2103-90-1010	고추장	2103-90-1030
		장류(된장, 춘장, 고추장 이외 기타)	2103-90-1090

10) 차류(가공)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녹차(별표 없는 것) 3g 이하 포장	0902-10-0000	차, 마태 조제품(쌀, 대용물 함유)	2101-20-1000
녹차(기타) 별표 없는 것	0902-20-0000	차, 마태 등 조제품 (기타 곡물을 함유한 것)	2101-20-9011
유자(기타) 별표 없는 것	2008-30-1000	차, 마태 등 조제품 (기타 과육 포장의 것)	2101-20-9019
감귤류 주스 기타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31-9000	차, 마태 등 조제품(기타)	2101-20-9090
기타(기타)	2009-39-9000	볶은 차, 커피,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보외) 기타	2101-30-9000

11) 쌀가공품(가공)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쌀가루의 것 (배, 기타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기타) (기타)	1901-20-1000	곡류 조제품(빵, 볶은 것, 콘플레이크, 이디콘칩, 튀김쌀 이외 기타)	1904-10-9000
조제 식료품 기타(쌀류의 것)	1901-90-9091	찌거나 삶은 쌀	1904-90-1010
조제 식료품(기타)	1901-90-9099	곡류 제조품	1904-90-9000
국수 (조제하지 않은 것) (과다 조제를 넣은 것) (기타)	1902-19-1000	미과	1905-90-1050
		식혜	2202-99-3000

12 축산물(가공)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돼지(중돈)	0103-10-0000	오리 절단육 (신선또는냉한것에한다)	0207-44-1000
쇠고기(신선냉동채이분체)	0201-10-0000	오리 간 (신선또는냉한것에한다)	0207-44-2010
쇠고기 (신선·냉장그밖의것으로서뼈로잘린 것일)	0201-20-1000	오리 기타 (신선또는냉한것에한다)	0207-44-2090
쇠고기 (신선·냉장그밖의것으로서뼈로잘린 것아)	0201-20-9000	오리 절단육(냉한것에한다)	0207-45-1000
쇠고기(신선냉빠없는것)	0201-30-0000	오리 간(냉한것에한다)	0207-45-2010
쇠고기(냉동채이분체)	0202-10-0000	오리 기타(냉한것에한다)	0207-45-2090
쇠고기 (냉동그밖의것으로서뼈로잘린 것일)	0202-20-1000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 (기름빼지않은 것신선·냉·냉·양·염장·건·훈한 것)	0209-10-0000
쇠고기 (냉동그밖의것으로서뼈로잘린 것아)	0202-20-9000	밀크, 크림 (지방·수분 및 염분 함량 기준)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0401-10-0000
쇠고기(냉빠없는것)	0202-30-0000	밀크, 크림 (지방·수분 및 염분 함량 기준)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0401-20-0000
돼지고기(신선 냉동채 이분체)	0203-11-0000	냉동크림 외 기타 (지방·수분 및 염분 함량 기준)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0401-40-9000
돼지고기(신선·냉장, 냉동/넓적다리살·어깨 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0203-12-0000	냉동크림 외 기타 (지방·수분 및 염분 함량 기준)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0401-50-9000
돼지고기(신선냉가타삼살)	0203-19-1000	탈지분유(지방·수분 및 염분 함량 기준)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0402-10-1010
돼지고기(신선냉가타아)	0203-19-9000	연유기타(지방 함량 기준)	0402-99-9000
돼지고기(냉동채 이분체)	0203-21-0000	요구르트(액체상태인 것)	0403-20-1000
돼지고기(냉동냉각처리 어깨살 뼈채절단)	0203-22-0000	요구르트(냉동)	0403-20-2000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돼지고기(냉동가타살)	0203-29-1000	치즈(가공액이나분유의것제)	0406-30-0000
돼지고기(냉동가타)	0203-29-9000	신선란(닭의것)	0407-21-0000
면양고기 (어린면양·신선·냉장·도제·아부분제)	0204-10-0000	기타의 신선란(가타)	0407-90-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0206-41-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 찬 것	0408-9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추냉동)	0206-49-1000	조란기타	0408-99-9000
돼지고기 식용 설육(가타냉동)	0206-49-9000	장(가타동물)	0504-00-1090
닭고기 (잘하지 않은 육 산란 것 나 냉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1-0000	소시지	1601-00-1000
닭고기 (잘하지 않은 육 냉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2-0000	소시지 유사물품 (소시지 이외 기타)	1601-00-9000
닭고기(잘육)	0207-13-1000	삼계탕(말뚝용 닭의것)	1602-32-1010
닭간장(냉장)	0207-13-2010	닭고기(가타제저장)	1602-32-9000
닭기타 설육(냉장)	0207-13-2090	돼지고기 (닭다리나 그 잘 육 말뚝용에 넣은 것)	1602-41-1000
닭다리(냉동)	0207-14-1010	돼지고기 (닭다리나 그 잘 육 말뚝용에 넣지 않은 것)	1602-41-9000
닭가슴(냉동)	0207-14-1020	돼지고기 (어깨나 그 잘 육 말뚝용에 넣은 것)	1602-42-1000
닭날개(냉동)	0207-14-1030	돼지고기 (어깨나 그 잘 육 말뚝용에 넣지 않은 것)	1602-42-9000
닭기타절단육(냉동)	0207-14-1090	돼지고기 (가타 혼합물 포함 말뚝용에 넣은 것)	1602-49-1000
닭간장(냉동)	0207-14-2010	돼지고기 (가타 혼합물 포함 말뚝용에 넣지 않은 것)	1602-49-9000
오리의 것(신선·냉장·잘하지 않은 육)	0207-41-0000	조제분유(위양소용)	1901-10-1010
오리의 것(냉동·잘하지 않은 육)	0207-42-000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식품 (조제분유 이외 기타소용으로 한정)	1901-10-1090
오리 지방간 (신선 또는 냉한 것에 한정한다)	0207-43-000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2105-00-1010

13 기타가공류(가공)

품명	HS코드	품명	HS코드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0904-22-0000	과실 건과류 잼·과실젤리와 마말레이드(marmalade)	2007-99-1000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1302-19-9099	과실 건과류 퓨레 페이스트 (잼·과실젤리와 마말레이드 이외 기타)	2007-99-9000
참기름, 분획물	1515-50-0000	배(기타방법 조제)	2008-40-0000
들기름, 분획물	1515-90-1000	딸기(기타방법 조제)	2008-80-0000
속을 채운 파스타 (조제한 것(예 생면))	1902-20-0000	과실 혼합물 기타	2008-97-9000
콘 플레이크	1904-10-1000	사과(기타방법 조제)	2008-99-2000
곡물제조식품(기타)	1904-20-9000	과실 건과기타(조제장차)	2008-99-9000
스위트 비스킷	1905-31-0000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비트(B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61-0000
와플과 웨이퍼	1905-32-0000	사과주스(비트(B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71-0000
리스크·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1905-40-0000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기타)	2009-89-1090
식빵(bread)	1905-90-1010	채소주스	2009-89-2000
건빵	1905-90-1020	기타과실주스 주기제것(혼합)	2009-90-109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1905-90-1030	채소주스(혼합)	2009-90-200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1905-90-1040	육류의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2104-10-100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과자 캐디 바킷 쿠키 크래커 쌀과외 기타)	1905-90-1090	채소로 만든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2104-10-3000
오이류(식초, 초산 조제)	2001-10-0000	두부	2106-10-1000
채소, 과실 건과류 조제품 (식초나 초산 조제 및 보존처리된 모든 꽃배추, 식육용 연고 및 양파외 기타)	2001-90-9090	조제품 기타	2106-90-9099
채소류 조제품 (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2006회의 품목 제외))	2005-99-9000	과실주스 음료	2202-99-2000
잼 제리 마말레이드(균질화 조제)	2007-10-0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0회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2202-99-9000
감귤류 잼·과실젤리와 마말레이드	2007-91-1000	양조식초	2209-00-1000

붙임 3 aT 수출지원사업 중 중복지원 제한 대상

- **(중복 선정 제한)** 패키지 사업의 다수 메뉴와 지원 내용이 중복
 - 사업명 :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 **(메뉴 사용 제한)**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aT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되어 사용 제한
 - 글로벌 NEXT K-Food(스타트업)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 (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샘플통관운송) 이용 불가

- **(중복정산 금지)** aT 개별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추진시 발생한 비용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에서 정산 불가

붙임 4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메뉴

구분	사업메뉴	지원내용
생산 · 수출 기반 (7)	수출컨설팅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수출실무, 수출전략,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임직원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품개발(기술도입)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 효능·성분 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
	해외인증등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인증취득비·대행비)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및 수출보험 비용, 해외 채권회수 대행업체(추심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원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목적의 해외 진출용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해외현지 분쟁 해결지원 등)
	통번역(수출용 자료)	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경우에 한함)
수확후 관리 (4)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수출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장기 유통을 위한 파렛트커버, 이산화염소 스틱, 전처리제 등
	포장디자인 개발	외부위탁을 통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디자인, 동판 또는 금형제작) - 수출용 제품명 표기 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요소를 반영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국문만 있는 경우 정산 불가) - 수출용 포장재 기능성 개선·개발
	수출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적용(수출통합조직 및 마케팅협의회, 인삼김치 캐릭터 등) 수출전용 포장상자, 포장자재 구입비 등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비용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운송 및 통관 (4)	샘플통관운송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물류 효율화	수출용 파렛트 구입비(목재 재질로서 열처리 방역 인증 필한 것에 한함) 등
	항만, 공항 부대비용	해상: 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항만 인근 저온저장시설 이용료, THC 등) 및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CFS 작업비, CA컨테이너 할증료 등 항공: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공항 인근 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한시적 물류 부담 완화 등 (검사기계 등 기자재 구매는 지원 제외)
판로 개척 (7)	글로벌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 홍보 목적으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 홍보(메스미디어, 온라인몰 홈페이지 등)
	현지시장 개척	- 바이어발굴 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의 해외 출장(항공료) - 수출국 현지바이어와의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항공료, 숙박료, 현지차량, 장소임차비, 통역비 등) -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외 바이어·소비자 대상 제품 선호도조사 등 실시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 장치비 등 부스 운영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료) - 현지 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시 발생하는 관련 제비용(항공, 숙박료, 차량비, 통역비 등)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행사(홍보비,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 수출국 유력 현지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등
	수출상담회	- 웹 상품 카타로그 제작, 통역비, 장소임차비 등 -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장소임차, 행사기획, 통역, 전시 및 시식등)
	지사화 사업	수출국 현지시장개척 및 시장정착을 위한 제반비용(공유 오피스 임차,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비 등)

*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메뉴별 특성을 감안한 전문수행기관 지정, 리스트 제공 및 활용 등은 별도의 정산기준을 따름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붙임 5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통 정산기준

1. 예산집행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으로, 국고 대 자부담 구성 비율은 중소기업 9대 1, 중견기업 8대 2 로 함
- 참여기업은 공통 및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은 불가
 - 정산신청 건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액을 참여기업에 지급함
-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및 별도 의무부여 현황

* 약정 체결시 까지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업체의 총사업비 기준 총 배정한도 내 별도 제한없음 * 단, 필요시 특정 메뉴에 일부 제한 있을 수 있음
사업메뉴별 최대 또는 최소 집행비율 제한	업체의 총사업비 기준 총 배정한도 내 별도 제한없음 * 단, 필요시 특정 메뉴에 일부 제한 있을 수 있음
수출의무액 부여	①사업메뉴 :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②총사업비 기준 집행액 중 국고보조분의 150% 이상 수출실적 달성의무 부여 * 수출신고필증 필수 제출
현지시장조사, 개별바이어 지원항목 및 한도	①참가업체당 지원횟수 제한없음 ②지원항목 : 항공료(왕복비용 확인 후 인정비용의 1/2에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숙박비 지원 불가 ③1회당 최대 인원 : 2명으로 제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사업메뉴 내 지원항목 및 지원항목 단위 지원한도	약정 체결 이후 최종 기준 공지

2. 정산신청

- 참여기업은 선택한 사업메뉴의 추진 시작 및 완료, 비용집행을 정산인정기간(~'26.12.20) 내 끝내고, 사업메뉴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 단, 해외인증등록은 예외적으로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인정기간 전 등록 추진을 시작하였다더라도 정산신청 가능
- 매월 수시 정산신청이 가능하나, 메뉴 사용 완료일 기준으로 2개월 초과분은 정산 불가

3. 비용 인정범위

-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수출실적 분류상 농식품(농산·축산 포함) 대상 집행비용만 인정 가능
 - 임산·수산식품 대상 집행비용을 포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정산 불인정 혹은 감액 조치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 * (자산성 항목으로 불인정하는 사례)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앱 개발, 기계류 구입 등
 - 부가가치세 정산 불가
 - 정산기준 상 인정 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

4.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

- 정산신청 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은 약정 체결 이후 제공 예정
- (기본 증빙유형) 정산신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집행증빙 등
 - * 필요 시 결과물 실물 또는 결과물 제작 여부 확인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 (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
- (인정가능한 집행방식)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현금집행,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송금이 원칙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되어, 국세청에서 유효한 것으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 정산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수정 발급사실알림 제공” 동의 필수
- * [aT]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참여기업]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사실 발생 시 알림

5. 해외집행

-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원칙
 -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운영기관(aT) 사전 승인 필요
- 환율 적용기준
 - 송금증에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 적용
 -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으로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현재환율 → 고시회차(최초 선택)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환율증빙 없는 경우,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 사업기간(행사시작일~행사종료일) 중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내실 때 기간평균 환율(단, 정산신청일은 협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평균환율(기간평균, 최초고시) 검색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6.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과는 계약 불가

7. 중복지원 제한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조치
- 동일 증빙으로 복수의 패키지 사업메뉴에서 정산 불가

* 이 외의 중복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문 상에서 별도 안내 예정

8. 기타사항

- (정산절차) 1차 원가정산기관 및 2차 aT 지역본부 검토 후 정산 승인여부 결정 및 정산액 지급
 - 운영기관(aT) 및 원가정산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매월 집행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정산신청 시 동월 말일까지 정산 결과 확정 및 정산액 지급
- * 정산 증빙 미비로 인한 보완 진행 시에는 예외로 함
-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

붙임 6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방법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1. TmyDATA 플랫폼 접속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

※ 전용 URL: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601&c=721&general=true>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하기
- 동의 변경하기
- 전송내역
- 동의내역

데이터 연결

MyTransQ

전송 항목선택

1. 전송 기관선택
2. 전송 항목선택
3. 전송 동의
4. 전송 완료

동의 내용

* 관세청 통계개산 제외물품은 증명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목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선택 동의일로부터 5년
자료조회 기간	2012-01-01 ~ 2030-01-31	전송일자	선택 매월
전송일자	매월	전송기간	2025-02-20 ~ 2030-01-31
수출업구분	<input type="radio"/> 전체 <input checked="" type="radio"/> 수출 <input type="radio"/> 수입	데이터기준	<input type="radio"/> 연월간 집계 <input checked="" type="radio"/> 신고건별
조회기간 기준	<input type="radio"/> 수리일 <input type="radio"/> 신고일 <input checked="" type="radio"/> 출원일	사업자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수출자 <input type="radio"/> 제조자 <input type="radio"/> 수출자+제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동의항목	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선적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 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항구공통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항정,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운송량, 신고이력가액, 신고 원화가액	
<input type="checkbox"/> 선택 동의항목	선택동의		

다음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하기
- 동의 변경하기
- 전송내역
- 동의내역

데이터 연결

MyTransQ

전송 동의

1. 전송 기관선택
2. 전송 항목선택
3. 전송 동의
4. 전송 완료

전송 동의서

전송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사	동의목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동의일자	2025-02-27	전송주기	정기 전송
전송일자	매월, 5일	전송기간	2025-02-20 ~ 2030-01-31
자료조회 기간	2012-01-01 ~ 2030-01-31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필수 동의항목	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선적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 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항구공통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항정,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운송량, 신고이력가액, 신고 원화가액	

[필수] 전송 및 열람·이용 동의 안내 내용보기

1. 수출입 신고정보는 본 동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으로의 정보 전송 및 열람·이용 동의 권한을 지정한 시점까지입니다.
3. 귀사가 전송기관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단, 1회 전송 및 전송한 내역의 경우 동의철회가 불가하며, 전송기관이 플랫폼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정기전송 동의내역은 착권 철회됩니다.)
4. 귀사는 본 정보 및 열람·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업무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권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위 자료의 전송 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송하기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인증서 선택

저장매체를 선택하세요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상태	구분	사용자	발급자	만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자(공동)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1. 수출입신고정보는 본 동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이용을 동의한 전송기관에 관해 제공되며, 사후 언제든지 그 열람·이용 통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의 정보 열람·이용 동의 권한을 지정한 시점 또는 동의를 철회하는 시점까지입니다. (단, 3회 전송의 경우 동의 철회 불가)
 3. 귀사는 본 정보 열람·이용 통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업무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권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위 자료의 전송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전송 완료

데이터 전송 완료

전송 기관선택 전송 항목선택 전송 동의 전송 완료

① 내역 확인은 "전송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내역의 경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